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4 선고 2018가단5006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

담당변호사 육삼신

피고(선정당사자) C

피 고 1. 주식회사 D

2. E

변론 종결 2019. 7. 24.

판결 선고 2019. 9. 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(선정당사자) C, 피고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35,665,795원 및 그 중34,563,55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19. 5. 29.까지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E, 선정자 F, G는 각 위 돈 중 8,916,448원 및 그 중 8,640,887원에 대하여 2018. 7.

1.부터 2018. 10. 10.까지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
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(선정당사자,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) C는 2015. 1. 24.경 H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, 피고 C가 소외 회사의 경매에 참가하여 청과물을 매수하는 중도매인 거래약정(이하 '이 사건 거래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, 그 기간은 약정일기준으로 1년으로 하되, 1년 후 재약정이 없는 경우 피고 C와 소외 회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.

나. 피고 E, 선정자 F, G는 이 사건 거래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,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C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발생한 채무 및 향후 발생할 미수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는 약정(이하 '이 사건 연대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피고 C는 2016. 8. 17.경 원고와 사이에, 원고의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중도매인 영업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소외 회사, 보험가입금액은 70,000,000원, 보험기간은 2016. 8. 6.부터 2018. 1. 23.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라.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거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사고가

발생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, 피고 C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던 데,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2018. 6. 30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다.

마. 피고 주식회사 D(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)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바.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, 원고는 2018. 2. 23. 소외회사에게 보험금 70,000,000원을 지급하고, 그 중 35,436,450원을 변제받았다.

사. 2016. 6. 30. 기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원금 잔액 34,563,550원과 2018. 6. 30.까지의 지연손해금 1,102,245원 합계 35,665,795원이 남아 있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,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보험금 34,563,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또한, 민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, 그 범위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.

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, 피고 E, 선정자 F, G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각 피고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공동보증인관계에 있으므로, 피고 E, 선정자 F, G는 위 34,563,550원을 균등 배분한 각 8,640,887원(= 34,563,550원 ÷ 4, 이하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E, 선정자 F, G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 E, 선정자 F, G 자신들은 이 사건 거래약정 당시인 2015. 1. 24.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만 체결하였을 뿐, 2016. 8. 17. 원고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.

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, 선정자 F, G가 원고에 대하여 지는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민법 제44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채무 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 C, D은 연대하여 2016. 6. 30. 기준 구상원리금 35,665,795원 및 그중 원금 34,563,55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9. 5. 29.까지 약정이율인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피고 E, 선정자 F, G는 각 위 돈 중 8,916,448원(= 35,665,795원÷4) 및 그 중 8,640,887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8. 10. 10.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순표

선 정 자 명 단

1. C

2. F

3. G

끝.